

사회복지연구소 규정

2006. 1. 19. 제정

2018. 6. 20. 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에 둔다. (개정 2014.9.26.)
- 제 3 조 (사업) 연구소는 사회복지분야의 이론 연구와 실천 모형의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학 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(개정 2014.9.26.)
1. 사회복지 이론 및 기술 개발과 교육·훈련 사업
 2. 사회복지 정책대안 개발 및 실천 현장 자문사업
 3.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사업 (개정 2006.10.20)
 4. 사회복지 문헌 출판 및 국제 학술 교류 사업 등
- 제 4 조 (소장·부소장)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- 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4.9.26.)
- ③소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14.9.26.)
- 제 5 조 (조직) ①연구소에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및 행정실을 둘 수 있다.
- ②센터의 운영 및 조직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- ③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.
- (개정 2014.9.26.)
- 제 6 조 (센터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.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4.9.26.)
- ②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 7 조 (연구위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4.9.26.)
-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4.9.26.)
-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

사회복지연구소 규정

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조의 2 (전임연구위원) ①연구소에 전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전임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.

③전임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(신설 2014.9.26.)

제 8 조 (연구위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9 조 (행정인력) 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(개정 2010.7.7)

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장, 소장, 부소장 및 소속 대학원 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.

(개정 2014.9.26.)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 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과학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9.26.)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(개정 2010.7.7)

제 12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연구소의 경비는 연구기금으로 충당한다.
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4.9.26.,
2018.6.20.)

부 칙(2006. 1. 19 제정)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0. 20 개정)

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8. 21 개정)

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9. 26. 개정)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